

축산물 위생·안전관리 실적평가와 향후추진계획

석희진 농림부 농촌진흥과장

I.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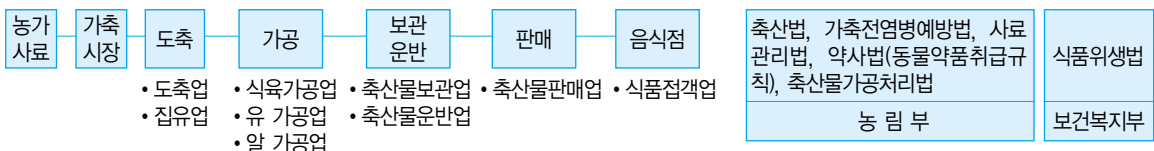
1. 축산물 안전 관리체계

〈축산물 위생 관리 개요〉

◇ 축산식품 위생관리는 '62년 이래 농림부에서 담당해오다 '85년 보건사회부로 일부(가공품)가 이관되었으나, 소비자 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'98. 6월 다시 농림부로 환원

- 축산법, 가축전염병예방법, 사료관리법, 약사법(동물약품취급규칙),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가축의 사육, 도살·처리, 집유, 축산물의 가공·보관·운반·판매의 전 과정을 농림부가 관리
- 허가·신고대상 축산물 업종
 - 허가 대상 : 도축업, 집유업, 축산물가공업(식육가공업, 유가공업 및 알가공업), 축산물보관업
 - 신고 대상 : 축산물운반업, 축산물판매업

〈축산물 안전관리 체계도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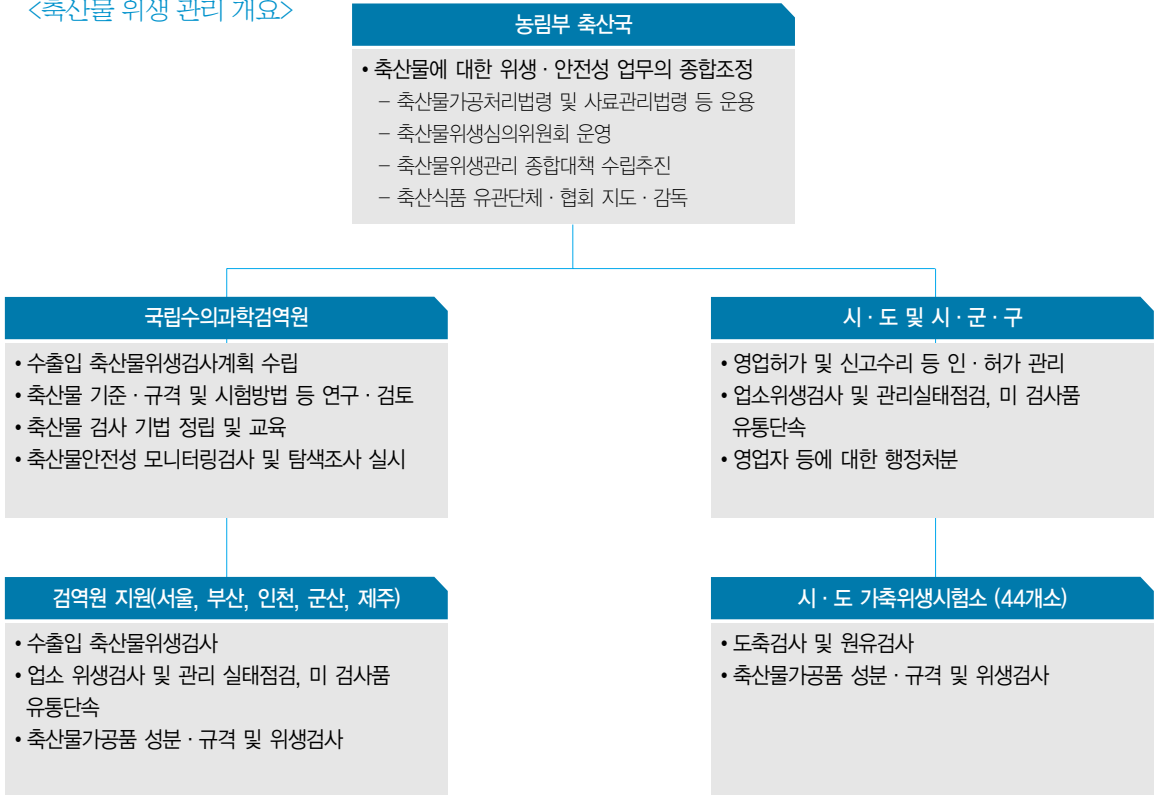


도축장			집유장	축산물가공업				축산물보관업	축산물운반업	축산물판매업				
계	포유류	가금류		계	식육	유	알			계	식육	식육부산물 전문	수입 축산물	우유류
166	105	61	61	2,304	2,070	153	81	143	784	54,220	47,568	860	1,002	4,790

(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, 수입축산물판매업, 우유류판매업)

2. 축산식품 위생관리 업무 추진기관

<축산물 위생 관리 개요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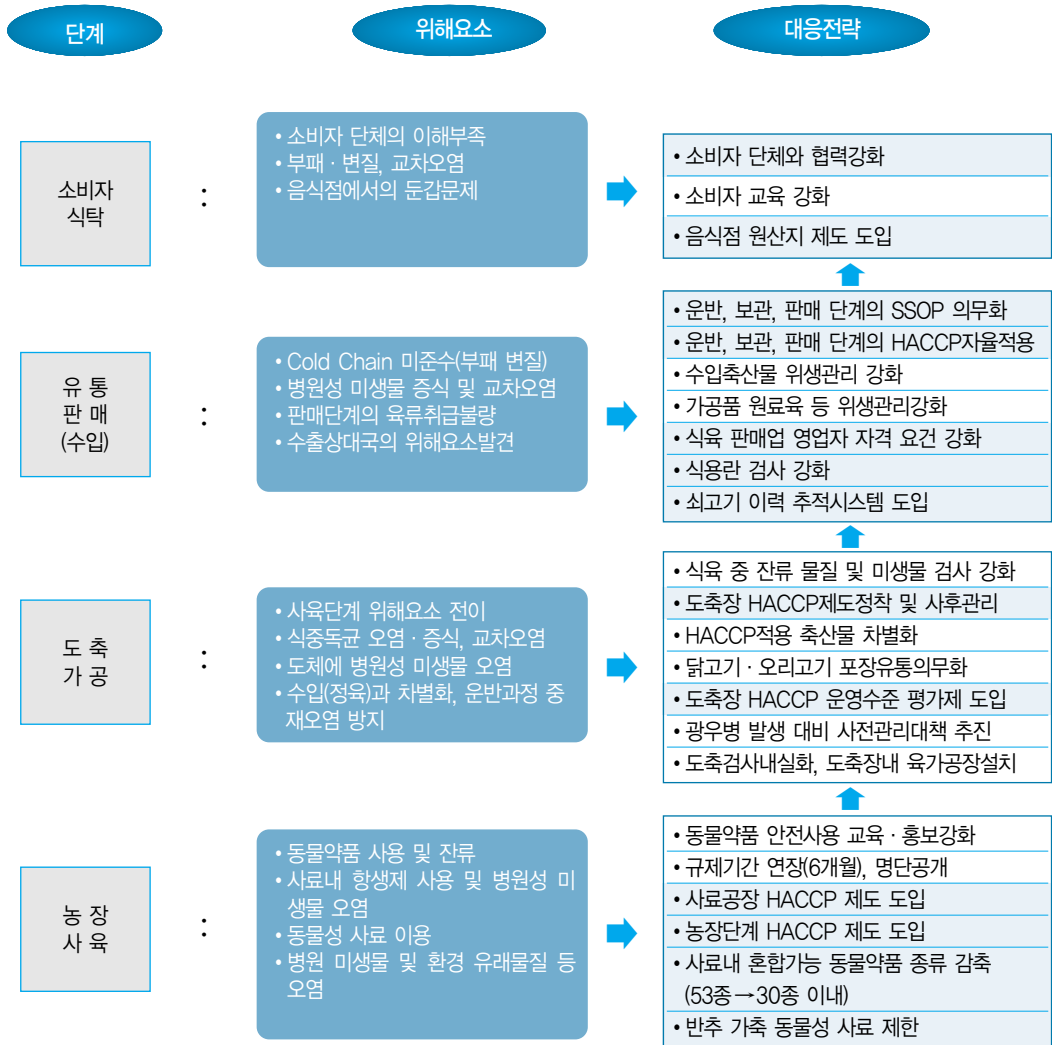


<축산물 위생관리 지원 기관>

구 분	기 관 명
축산물위생교육기관	한국식품개발연구원, 대한수의사회,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, 보건산업진흥원, 축산기업조합 등 5개 기관
축산물위생검사기관	검역원, 식의약청, 축산연구소, 시·도 가축위생시험소, 한국식품개발연구원, 한국생활용품연구원, 삼성에버랜드(주) 식품연구소 등 38개 기관
유 관 기 관	축산연구소, 농협, 한국소비자보호원, 생산자단체, 소비자 단체 등

II. 위생·안전대책 추진방향

농장(Farm)에서 식탁(Table)까지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축산물 위생·안전관리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



교육홍보를 통한 의식전환 유도과 위반자 처벌을 병행
우수브랜드를 중점 육성하여 안전 및 위생기준 향상

Ⅲ. 축산물 위생·안전성 제고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

1.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위한 사육단계의 위생관리 강화

1.1 동물약품 안전사용지도 및 식육종 잔류방지 규제강화

1) 추진 과제

-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 (년2회)· 홍보 실시
-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요령 개정(농림부 고시)
 - 규제기간연장, 명단 공개, 관리 방법, 1농가 1공무원 담당제 도입 등

2) 현재까지 추진실적

- 권역별 (수도, 충청, 호남, 영남, 제주 등 5개) 전국순회교육 (2회)실시
 - * 04년 2회 순회교육 : 04년 6월 및 11월 교육실시(1,480명)
 - * 05년 2회 순회교육 : 05년 6월 및 11월 교육실시(1,978명)
- HACCP적용작업장명단, 동물약품안전 사용수칙 등 제작배포(15천부)
 - * 리후렛4,000부, 시장바구니5,000개, 포스타 제재(전면광고), 수첩5,000부 등
-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요령 개정(농림부 고시: 05.3.2)으로 규제강화
 - ① 잔류위반농가(모니터링검사 결과)에 대한 규제검사기간 연장

- 규제검사기간연장으로 특별관리강화 : (중전) 3개월 → (연장) 6개월
 - * 규제검사(도축된 지육 계류 후 검사)결과 잔류허용기준초과 지육은 폐기
 - ② 잔류 위반농가명단을 검역원 홈페이지에 공개
 - ③ 규제검사 대상 농가 집중 관리
 - 규제검사 대상농가에 대한 1농가 1공무원 담당관 지정
 - 규제검사대상농가의 특별관리기간(6개월)동안 출하상황 감독
 - 잔류원인규명, 후기사료급여, 휴약기간 준수 등 사양관리 개선지도
 - ④ 잔류위반농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검사 대상농가의 익명 출하 방지에 대한 감시, 감독 실시
 - ⑤ 모니터링 및 규제검사에서 잔류허용기준 초과농가에 과태료 부과
 - (중전) 연속잔류허용기준 초과 농가 → (개선)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가
 - * 잔류위반농가 지정·관리 현황 : ('01) 161농가, ('02) 128농가, ('03) 183농가, ('04.) 200농가, ('05.) 222농가
 - * 위반두수 : ('01) 177두, ('02) 145두, ('03) 236두, ('04.) 299두, ('05.) 309두 +검사항목 :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149종 중 125종 검사
 -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53종, 농약등 환경오염물질 72종
- 검사내용 : 모니터링조사, 규제검사, 탐색조사
 - ⑥ 모니터링 간이검사 결과 잔류위반예측

농가의 일시 출하제한

- 모니터링 간이검사 양성농가에 출하제한 통보 (정량검사 완료시까지)

3) 향후 추진계획

- 권역별 축산물 위생·안전성 확보 전국 순회 교육 (06년중 2회)
 - 농가, 사료·도축·가공·보관·운반·판매단계 종사자, 학교급식 등 대상
 - 동물약품 안전사용방법, 식육취급요령, HACCP적용방법 및 우대조치 등
-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개정 추진
 - 모니터링 검사결과 양성축 출하 Lot출고 보류후 정량검사 등
- 잔류위반농가 과태료 인상조정 : 100만원 → 300만원
 - 약사법 제72조의6 제3항과 제79조 개정 추진 (복지부와 협의)
- 전국 항생제 내성균 감시 시스템 네트워크 구축

1.2 사료공장 HACCP 도입 및 위해물질 관리 강화

1) 추진과제

- 사료공장 HACCP지침 마련 및 시행, 매뉴얼 및 홍보물 제작배포
- 사료공장 HACCP 시행준비를 위한 교육실시
- 사료공장 HACCP 시행 및 인증서 발급 및 우대 조치
- 사료내 혼합가능 동물약품 종류 감축 계획 보고(대통령업무보고, '04.3.8) : (현행) 53종 → (계획) 30종 내외로 감축

- 사료내 관리대상 중금속 및 잔류농약 종류 확대
 - 중금속 : (현행) 8종 → (확대) 곰팡이독소 등 추가 관리
 - 잔류농약 : (현행) 17종 → (확대)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

2) 현재까지 추진실적

- 사료공장 HACCP도입 근거규정 마련 (사료관리법 개정, '01.3)
- HACCP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('00.7~'03.7)
- 사료공장 HACCP도입 기본방침 수립 ('04.2)
- HACCP 지침 마련을 위한 작업반(T/F) 구성 ('04.2)
 - 축산연구소, 검역원, 농관원 등에 작업임무 부여
- T/F팀 실무작업반에서 HACCP지침 및 매뉴얼(안)마련('04.3~9)
- 사료공장 HACCP도입 대비, 시설개보수자금 예산신청('05년 210억원)
- HACCP 지침안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료공장 점검('04.10.12~20)
- HACCP 지침안 확정 및 입안예고, 규제심사('04.11.14)
- 사료공장 HACCP 교육 실시('04.12.1~2)
- 국내외 배합사료 제조시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 조사('04.4.7)
 - 국내 사용실태(농협,사료협회), 외국실태(축산연, 농관원)
- 사료내 혼합가능 동물용의약품 감축계획 협

- 의('04.5.28, 7.29)
 - 농림부, 축산연구소, 검역원, 농관원 등 관계관 10명
 - 동물용의약품 감축안 확정 :(현행)53종 → (조정)25종(△28종)
- 「유해사료의범위기준」개정고시안 입안예고 및 규제심사 완료('04.10.14~27)
 - 혼합가능 동물용의약품 감축(안), 관리대상 중금속 및 잔류농약 확대(안)을 병행하여 추진
- 전문가 및 관계자 회의 개최 및 제출의견 협의('04.11.17)
- 「유해사료의범위기준」개정고시('04.12.10, 농림부고시 제2004-72호)
 - 사료제조시 혼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종류 감축(현행 53종→ 개정 25종)
 - 중금속등 위해물질종류 확대(증 4종) 및 관리대상 잔류농약종류 확대(증 10종)
- 사료공장 HACCP 지침 확정 공표 및 적용 메뉴얼 배포 ('04.12)
- 05 사료제조업체 교육실시 (05.12.15-12.16) : 280명
- 3) 향후 추진계획
 - HACCP 적용 사료공장 정책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
 - 사료공장 HACCP 시행준비를 위한 교육 지속 실시
 - 사료공장 HACCP 신청 · 심사 및 인증서 발급 ('05.1월~)
 - * 사료공장 HACCP 지정 : 23개소
 - 개정내용 지도 · 홍보 지속 실시('04.12~)

1.3 사육단계의 축종별 위해요소중점관리 (HACCP)제도 도입

1) 추진과제

- 사육단계의 HACCP지침 및 적용모델개발
 - 기본개념, 국제규정, 외국도입사례, 선행요건프로그램, HACCP지침
 - * 05년도(돼지), 06년도(젓소, 비육우), 07년도(산란계, 육계)
 - * 사육단계 HACCP : 축사시설(인프라)를 바탕으로, 밀사정도, 가축입식요령, 안전사료확보, 사육환경을 기본(선행요건프로그램)으로 하고, 특정미생물 등 생물학적 요인, 동물약품 · 농약 · 중금속 · 환경물질 등 화학적 요인, 주사바늘 등 물리적 요인, 병변 · 외상 등 병리학적 요인 등의 관리내용 기록 및 검증, 유효성분석 등을 통한 개선책을 강구하는 제도입

2) 현재까지 추진실적

- 사육단계 HACCP 지침 및 적용모델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
 - 05.4. : 농림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로 채택(기획연구과제)
 - * 건국대 수의대 (책임 연구자 : 서정향 교수)
- 사육단계 HACCP개념 정립을 위한 자료수집(05.10, 덴마크, 일본)
 - 사육단계 HACCP 적용 방법, 사례 및 지침 입수
- 연구용역 중간결과 발표회개최(3회 : 05.7, 05.9, 05.11, 06.3)
 - 기본개념, 국제규정, 외국도입사례 (일본, 미국, 유럽 등) 발표

- 위해요소(화학적, 생물학적)조사결과, 선행요건프로그램 개발내용 발표
- Codex 7원칙 12절차에 의한 사육단계(돼지) HACCP적용 지침(안) 발표
-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(06.3.24공포, 법률 제7915호)
 - 법 목적(제1조), 위해요소중점관리(제9조)에 가축사육부분 명시
- 3) 향후 추진계획
 - 사육 단계(돼지)HACCP 적용 지침 확정 및 매뉴얼 배포
 - 돼지 사육농가 HACCP 지침내용 및 적용 희망 농가 교육 실시
 - HACCP 지정 희망 농가 심사 및 지정서 교부

< 돼지사육단계 HACCP지침 기본개념과 시행 >

□ 사육단계 HACCP적용의 필요성

- 기술적 측면에서 볼때, 축산물의 위생·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사육단계에 위해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
-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볼때, 축산물 수입완전 개방화에 국제 경쟁력을 확보와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산 축산물의 위생·안전성 확보가 필연적임
- 사회 문화적 측면에 볼때, 웰빙(well-being)시대에 문화 패턴의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진입을 위해서도 축산물의 위생·안전성 확보가 필요

□ HACCP 지침

- 돼지사육단계 HACCP지침은 기본적인 선결과제로 선행요건프로그램의 준수와 HACCP계획서의 마련 및 구축이 필요
- ① 선행요건 프로그램 : 크게 위생관리와 생산관리로 나눌 수 있음
 - a. 위생관리기준서로 ㉠ 시설환경 기준서(시설설계 및 설비, 시설보수 및 위생) ㉡ 위생관리기준서(백신·화학제 등 부재료, 돼지운반, 출하돼지관리) ㉢ 사양관리자의 위생관리기준서(종사자위생, 교육) 있음
 - b. 생산관리기준서로 ㉣ 週間관리기준서, ㉤ 생산계획관리기준서, ㉥ 후보사관리기준서, ㉦ 교배사관리기준서, ㉧ 임신사관리기준서, ㉨ 분만사관리기준서, ㉩ 자돈사관리기준서, ㉪ 육성 비육사 관리기준서, ㉫ 출하돈 관리기준서, ㉬ 육종관리기준서, ㉭ AI관리기준서 등이 있음
- ② 선행요건프로그램이 충족되면, 그 다음으로 HACCP프로그램이 추진되어야함
 - 5가지의 HACCP 실행 예비단계 : 팀의 구성, 제품의 기술, 해당식품소비대상의 식별, 공정 흐름도 작성, 해당흐름도 검증
 - 7가지의 HACCP계획의 원칙수행 : 위해분석 실시, 중요관리점 식별, 각 중요관리점별 허용한계치 설정, 감시절차 설정, 개선조치 설정, 기록관리절차 설정, 검증절차 선정

□ HACCP운용 : 금년부터 돼지농장을 중심으로 HACCP지정 등 추진

2. 도축·가공 과정에/서의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대책

2.1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물량 확대 및 검사결과 평가

1) 추진과제

-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 물량 확대
 - ('04) 102천건 (모니터링 간이검사 96천건 및 정밀검사 6천건) → ('05) 120천건 (모니터링 간이검사 96천건, 정밀검사 6천건, 규제검사 예상 18천건)
 - * 규제검사기간 연장(3 → 6개월)에 따른 검사물량의 증가
- 잔류위반가능성이 높은 물질의 집중검사를 위한 검사항목 및 검사물질 그룹별 정밀검사건수 재설정
 - 시·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권역별 정밀정량 검사항목 조정 및 정밀검사물량 배정

2) 현재까지 추진실적

- 2005년 국내산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계획 수립 및 시달
 - 시·도 검사기관별 간이검사 및 정밀검사 물량 산정(집중검사항목설정 등)
 - * 산란계에 엔로플록사신 사용 금지 및 검사강화 지시 (2회)
 - 모니터링검사 : 간이검사 96천건 및 정밀검사 6천건, 규제검사 18천건
 - * 잔류 물질 검사건수 : 한국 120천건, 미

국 34천건, 일본 8천건, 호주 16천건

* 잔류위반율(04기준) : 한국 0.25%, 미국 0.73%, 영국 0.24%

3) 향후 추진계획

- 2005년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내용 평가회 개최 (06.)
 - 축종별, 항균물질 등 항목별 잔류위반정도 평가
- 2006년 국내산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계획 확정(시도별)

2.2 식육중 미생물 검사 물량 확대 및 검사결과 평가

1) 추진 과제

- 검사건수 : (04) 100천건 → (05)확대 120천건
- 검사항목: 대장균수(E. coli), 일반세균수, 살모넬라균(Salmonella spp.)
- 검사기관 : 시·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
- 검사기간 : '06. 1. ~ '06. 12.
- * HACCP적용 모든 작업장을 대상으로 실시

2) 현재까지 추진 실적

- 식육중 미생물 검사계획 수립 시달('06.1): 120천건
 - 일반세균수 및 대장균수 : 축종별 3건/주 1회 검사(8만건/년)
 - 살모넬라균: 도축 규모별 검사(4만건/년)
- "식육중 미생물검사요령"(농림부고시)개정 (05.3.29)
 - 검사항목 : 일반세균수 및 대장균수(살모넬라균은 삭제)

* 살모넬라균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에 의해 검사

- “식육중 미생물검사요령”시달 및 검사 실시(’06.1~12)
 - “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”(농림부 고시): HACCP적용작업장
 - 대상항목 : 대장균수(도축업 영업자), 살모넬라균(시, 도)
 - 검사물량(살모넬라) : 도축 규모별 검사 실시

3) 향후 추진계획

- 2005년도 식육중 미생물 검사결과 평가회 개최(06)
- 2006년도 식육중 미생물 검사계획 시달 (06.1)

2.3 도축장 HACCP제도 정착과 사후관리강화

1) 추진 과제

- HACCP 운용실태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개선
(시도 자체 점검 → 시도 간 교차 점검)
 - 전반적인 위생수준은 많이 향상, 도축장 별 위생수준의 차이는 있음
 - 지속적인 도축장 HACCP 운용실태 점검 강화 등 사후관리 강화로 도축장의 전반적인 위생수준 향상과 HACCP의 조기 정착을 유도

- HACCP 미운용 업소에 대한 과징금제도 폐지

- 미 운용업체, 부실운용 업체가 있어 HACCP 제도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우려됨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의 강화 필요성 대두

- HACCP 교육 기관 및 교육 대상자 확대 추진
 - 축산물가공, 유통, 판매업체 등의 관련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하여 HACCP 교육 실시
- 2) 현재까지 추진실적

□ 도축장 HACCP 운용실태점검 (시도간 교차점검 : 03.7.1의무적용)

- 1차 점검 : ’03.07.~’03.08. (행정처분 62개소)
- 2차 점검 : ’03.11.~’04.01. (행정처분 32개소)
- 3차 점검 : ’04.06.~’04.08. (행정처분 18개소)
- 4차 점검 : ’04.12.~’05.02. (행정처분 7개소)
- 5차 점검 : ’05.08.~’05.09. (행정처분 1개소)
- 6차 점검 : ’06.2~’06.4월

□ HACCP 미운용 업소에 대한 과징금제도 폐지 (행정처분기준 강화)

-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41조 관련 별표 11개정을 위한 법령 정비 중

구분	1차	2차	3차
현행	경고	영업정지15일	영업정지 30일
개선	영업정지 7일	영업정지 30일	영업정지 2개월

□ HACCP 교육기관 확대 및 교육과정 신설

- 교육 실시 기관 확대
 - (현행) : 한국식품연구원, 대한수의사회,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, 보건산업진흥원 등 4개
 - *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명시 (04.8.4)
- HACCP 적용작업장 영업자 의무교육실시 조항 추가
 - 영업자에 대한 교육 : 4시간, 종업원 : 24시간
 - 정기교육훈련 : 매년 1회이상 8시간 및 수시훈련 실시
- HACCP 담당자 교육실시('04년, 20회 928명)
 -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 및 팀장과정 교육(9회, 437명)
 - 한국식품연구원 기본 및 전문과정 교육(8회, 382명)
 - 대한수의사회 기본과정 교육(3회, 109명)
- HACCP 담당자 교육실시(05년, 30회 1,590명)
 -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 및 팀장과정 교육(11회, 650명)
 - 한국식품연구원 기본 및 전문과정 교육(11회, 584명)
 - 대한수의사회 기본과정 교육(6회, 292명)
 -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(2회 64명)
- 영업자 HACCP 정기교육훈련 과정신설 추진
 - 한국식품연구원 '05년도 영업자 정기교

육과정 신설 (3회 : 4월, 7월, 10월)

3) 향후 추진계획

-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41조 관련 별표 11개정(과징금 제도 폐지)
- 전 단계 HACCP적용에 따른 교육기관 확대 및 교육과정 신설추진
 - 축산물위생교육원(농협)등 교육기관 확대 추진

2.4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제도 도입 및 시행

1) 추진과제

-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실시
 - 도축장 HACCP을 도입 · 운용하고 있으나, 여전히 소비자들은 운용내용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 운용 수준도 차이가 있음
 - HACCP 우수운용 도축장에 대하여 우대조치가 필요
- 도축장 HACCP운용수준평가법적근거 마련(축가법 제9조 제10항 신설)
 - HACCP운용수준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자금 차등지원 등

2) 현재까지 추진실적

- 도축장 HACCP운용수준평가실시 (한국소비자연맹) : 2회 (상 · 하반기)
 - 평가원칙 : 년 2회 실사단(30명)이 도축장을 직접 방문평가 후 평가위원회 (25인 이내 : 생산자, 소비자 단체 등)상정 · 확정 및 발표
 - 평가대상 : 전국 포유류 도축장 (울릉도, 백

령도 제외), 닭 도축장 중 HACCP 운용 도축장 (135개소)

- 평가항목 : 도축장 인프라 (도축검사라인, 환경상태 등)구축정도, HACCP운용실태 (위생관리, 시설관리, HACCP관리 등)

- 평가결과 (상반기) : 포유류 도축장 (상급 28개소, 중급 29개소), 닭 도축장(상급 11개소, 중급 12개소) 확정 발표

* 상반기 평가결과 도축장 운영자금 차등 지원 (578억원, 6.28)

○ 도축장 HACCP운용수준평가 법적근거 마련 추진 중 (추가법 개정)

3) 향후 추진계획

○ 06 도축장 HACCP 운용수준평가 실시 (06.8-11, 06년중 1회실시)

○ 도축장 HACCP운용수준평가 관련 하위법령 정비

2.5. HACCP적용축산물 차별화 및 HACCP불법명칭사용 규제

1) 추진과제

○ HACCP적용 도축장, 가공장 생산 축산물의 소비확대 추진

- 국가기관 : 국방부, 교육인적자원부, 보건복지부, 노동부, 산자부

- 정부투자기관, 지자체 등 105개 기관에 우선 사용 협조 요청

○ HACCP 불법명칭사용 규제

2) 현재까지 추진실적

○ 04년부터 국가기관, 정부투자기관, 지자체 등(105개 기관)에 협조요청(년 3-4회)

- 협조요청 결과 HACCP 적용 가공장 개소 수가 증가 추세(264개소)임

○ HACCP명칭 불법사용규제를 위한 법령(축산물가공처리법)개정(04.1.29)

○ HACCP 명칭 불법사용 현황 파악 및 처분조치('04.7.31) : 16개소

○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내용홍보(04.1.29 개정내용)

○ 시·도, 관련업계 등에 HACCP 적용작업장 등의 명칭 불법 사용(광고·표시) 등 금지 홍보 ('04.12.16)

* 홍보용책자 (1천부), 팜플렛 (5천부), 리플렛(10천부), 포스타(30천부), 지하철광고(6개호선, 2,030차량, 6개월) 등

3) 향후 추진계획

○ HACCP적용도축장, 가공장 생산 축산물 우선사용 협조요청 지속실시

* 105개 국가기관, 투자기관, 지자체 등

○ HACCP 불법명칭 사례 등을 수집 및 지속적인 단속 실시

○ HACCP불법 컨설팅 단속강화 및 제도구축 (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완료)

- HACCP 컨설팅기관(업체) 자격요건 규정

2.6 광우병 예방을 위한 사료 안전성 관리 강화

1) 추진과제

○ 반추동물유래 동물성단백질사료 혼입여부 검사 실시

○ BSE 예방을 위한 시설개보수자금 지원

○ 양축농가·사료제조업체 등에 대한 교육·홍보 실시

2) 현재까지 추진실적

- 광우병 예방을 위한 동물성사료 관리방안 마련('03.2)
-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개정고시('03.9.23)
 - 반추동물유래 동물성단백질사료 이외 동물성유지 · 어분 · 어즙흡착사료 등도 반추동물용 사료로 사용 금지
- 사료공정서 개정고시('03.9.23)
 - 반추동물사료 생산공정에서 동물성단백질사료 사용금지
 - 반추동물사료 전용운반차량, 톤백 및 지대포장 구분 의무화 등
- 사료검사요령개정고시('03.9.23)
 - 반추동물사료에 대한 반추동물유래 동물성단백질사료 혼입여부 검사제도 도입 (2004년부터 시행)
- 동물성 단백질 사료 관리실태 일제 점검 ('04.10.25~11.4)
 - 점검대상 : 전국 90개 배합사료공장, 시도 및 중앙점검반 합동
- 시·도 사료담당자 및 사료제조업체 등에 대한 교육('05. 12. 1~2)
 - 장 소 : 충남 대천 한화리조트
 - 참석자(210명) : 시·사료검사공무원, 사료제조업체 및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등

3) 향후 추진계획

- 사료제조시설 개보수 자금 지원

2.7 광우병 발생 대비 SRM 제거시설 설치 및 소각장 지정

1) 추진과제

- 도축장내 특정위험부위(SRM) 제거시설 설치 (시범사업)
 - (05) 2개소 → (06) 3 → (07) 5

- SRM 소각장 지정 및 운영

2) 현재까지 추진실적

- '05 SRM제거시설 설치예산 확보(2개소) : 국비14억원 (70%), 지방비 4억원(20%), 자담 2억원 (10%)
- 05년도 SRM 제거시설 설치 대상업체 추천 요청 (시도) : 5개소 신청
- SRM 제거시설 설치 대상업체 확정 : 2개소
- 선진국의 SRM 제거시설 견학 (일본, 덴마크)
- SRM 제거시설 설치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설치요령 시달
 - 설치 자금 배정 (업체당 7억원 보조, 지방비 2억, 자담 1억)
- 발생전 특정위험부위(SRM) 유통실태 파악
 - SRM 추정생산량 (1일 60두 도축시) : 1일 1.02톤(년간 306톤)
 - 1두당 SRM 생산량 : 17Kg 생산
- 폐기물처리장 현황파악 : 7개소
- 06년도 SRM 제거시설 설치 대상업체 추천 요청 (시도) : 2개소 신청
- SRM 제거시설 설치 대상업체 확정 : 1개소

3) 향후추진계획

- SRM 제거시설 설치상황 점검 및 교육 실시
- SRM 소각장 지정 및 세부운영지침(안) 작성
- 06년도 SRM 제거시설 설치 대상업체 확정 : 1개소

2.8 도축 검사 강화를 위한 검사 인력확보

1) 추진 과제

- 소·돼지 등 포유류 도축장의 검사관 및 보조원 소요인력 추정
 - 필요 인원: 도축장당 10명(검사관 및 보조원)
 - 검사관 (540명): 소도축장(2명), 돼지도축장(3명)
 - 검사보조원 (640명): 소도축장(2.9명), 돼지도축장(3명)
- 도축 검사관 확보 (지자체 협의)
- 도축검사보조원 채용 등 확보

2) 현재까지 추진실적

- 도축 검사관 65명 지자체 정원 인정 (행자부)
- 단순행정지원업무 보조원 확보 (301명)
- 도축 검사관 확보 근거 마련 (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17조의2)
 - * 도축검사관 250명 확보 근거 조항 신설
- 도축검사보조원 채용 · 배치 (100명), 운용 계획 확정 및 시달

3) 향후 추진 계획

- 06년 도축검사보조원 채용(30명)
 - 채용공고, 원서접수, 서류전형, 필기 · 면접시험 등 실시 후 도축장에 배치
- 도축검사보조원 채용, 임무 등 관련근거마련(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중)
- 도축검사결과와 농장 활용방안 마련 시범사업 실시검토(제주도)

2.9 닭·오리고기 지육·정육의 포장 유통 의무화 추진

1) 추진과제

- 닭고기,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기본계획수립

○ 목 적

- 포장의 정의, 포장원칙, 의무시행시기, 기본자료 수집·분석
 - *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계육협회에서 개선책 마련 요구
 - 포장유통 의무화 연구용역사업 추진
 -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등 추진
- 2) 현재까지 추진실적

□ 포장 유통 의무화 기본계획 수립

○ 목 적

- 비 포장 상태로 유통되는 닭·오리고기의 재 오염 기회 차단
- 포장 유통(표시)으로 수입 닭·오리고기와 구별에 따른 차별화 가능
- 포장의 정의 (안)
 - 닭·오리의 지·정육을 용기에 담아 포장한 후 봉인하거나, 개별진공포장을 한 것으로서 외부에 합격검인 및 표시기준에 의한 표기가 된 제품을 말함
- 포장 원칙
 - ① 닭·오리 도축장 외부로 반출되는 지육(자체 가공제외)의 포장
 - 포장 후, 합격검인 및 포장외부에 도축장명, 소재지, 함량 등 표시한 후 유통
 - ② 닭·오리고기 가공장 생산 부분육, 정육 등의 포장
 - 용기에 담아 포장한 후 생산도축장·생산가공장 소재지, 함량 등을 외부에 표시하고 자체위생관리인의 확인 후 유통
 - ③ 닭·오리고기 판매장(백화점, 대형마트,

재래시장, 정육점에서 지육 또는 부분육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

- 용기에 담아 포장한 후 생산도축장 · 생산 판매장 소재지, 함량 등을 외부에 표시(국내산과 수입육 구분표시)한 후 판매

④ 수입된 닭 · 오리고기를 가공하거나, 판매하는 영업자도 국내산의 경우와 같이 포장, 표시 등을 하도록 의무화

○ 의무시행 시기

① 닭 · 오리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지육 : 도축 규모에 따라 단계별시행

- 1일 도축 8만수 이상 : 2007년부터 시행
- 1일 도축 8만수 미만 : 2008년부터 시행

* 법개정 및 시행령 개정후 1년간 유예기간 설정 (홍보, 교육 등 사전준비)

② 가공장 반출 부분육 · 정육 : 2008년부터 시행

③ 지육을 절단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 부분육 : 2008년부터 시행

□ 포장 유통 의무화 연구용역 추진 완료 (건국대 민상기 교수)

○ 닭고기, 오리고기 유통실태, 포장방법, 표시 방법, 분할방법 등 연구

□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 완료

○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, 운반, 진열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함(법 제10조의 2, 제1항)

○ 제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

통령으로 정함 ((법 제10조의 2, 제1항)

3) 향후 추진계획

○ 포장유통 의무를 위한 교육 홍보 추진

○ 축산물가공처리법 하위법령 개정(06) : 시행규칙 제2조 (별표 1) 및 제23조 (별표 8)

- 닭 · 오리 · 칠면조등 가금류의 식육포장의 무화, 합격표시 및 포장시 표시방법

3. 유통단계의 재 오염 방지 대책

3.1 축산물 유통(보관 · 운반 · 판매 · 집유)단계 HACCP도입

1) 추진과제

○ 판매단계 HACCP 적용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

- 판매단계 HACCP 모델 개발 연구 용역 추진

○ 집유 · 보관 · 운반단계 HACCP 적용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

* 축산물가공처리법상 HACCP적용규정 마련, 구체적 평가기준 미비

2) 현재까지 추진실적

○ HACCP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T/F팀 구성 ('04.9.)

- 농림부, 검역원, 시 · 도(서울시, 경기도) 한 식연, 관련단체(업계) 등

○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축산물판매업소(식육)조사(04.11.9~11.24)

- 백화점등 대형유통업체 및 중소기업 축산물판매업 : 11개사

○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HACCP 분과위원회 회의 추진(서면, 12.23)

○ 식육판매업 HACCP 평가기준 확정 및

- HACCP적용업소 심사 · 지정
- 집유단계 HACCP 적용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중(중간발표회 개최)
- 3) 향후 추진계획
 - 축산물판매업(식육) HACCP 적용 모델 개발 보급
 - 집유업 HACCP적용모델개발추진 (06.11) 및 교육 · 홍보
 - 축산물 보관 · 운반단계 HACCP적용모델 개발 추진

3.2 축산물위생감시원 (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) 제도 정착

- 1) 추진과제
 -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 확대
 - (04) 1,031명 → (05) 2,000명
 - 실질적인 감시가 되도록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감시 수당 인상
 -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 실시
 - 확대 위촉 후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(시·도지사)
- 2) 현재까지 추진실적
 -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요령 제정 : 위촉 확대
 - (04) 1,031명 → (05) 2,000명
 - 위촉기관 : (중전) 시·도지사 → (확대) 농림부장관, 시·도지사
 -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감시수당인상을 위한 예산안 반영 (05년)
 - 예산내역 : 축산발전기금 133백만원 ('04 : 96백만원)

- 감시활동수당 : (중전) 3만원/일 → (확대) 5만원/일
- 지급일(활동일) : (중전) 15일 범위내 → (확대) 30일 범위내
- 시도에 해당 기관별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 지시 : '04.11.5
 - 위촉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에 위촉장 및 감시원증 발급
-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순회교육 : 한국소비자교육원,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
- 3) 향후 추진계획
 - 위촉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에 대하여 시·도별로 교육지속 실시

4. 판매 · 소비단계의 위생 · 안전성 확보 대책 IIIII

4.1 유통중인 축산물 수거검사 및 식용란 위생검사 실시

- 1) 추진과제
 - 유통중인 축산물 수거검사 등 계획수립
 - 05 축산물 위생 감시지침 시달
 - 식용란 검사 기본계획 수립
 - 검사기관, 시료채취, 검사대상, 검사항목 등 세부검사요령 마련
 -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확정 고시
- 2) 현재까지 추진 실적
 - 05 축산물 위생감시지침 시달
 - 유통중인 축산물 수거검사 등 실시
 - 축산물 수거검사 4,573건, 부적합 23건 (위반율 0.50%)

- 영업장 위생검사 60,069개 업소, 위반업소 3,029개소 행정처분
-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확정(농림부고시 2005-19 : 2005.11.17)
 - 시료채취 및 검사기관 : 전국 시·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
 - 검사대상 : 닭, 오리, 메추리에서 생산되는 식용란
 - 검사항목 : 이물질검사, 변질 · 부패란검사, 살모넬라균 및 잔류물질 검사
 - * 식용란이 축산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검사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식용란 검사에 관한 위생검사 세부실시요령 마련
- 3) 향후 추진계획
 -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실시
 - 검사상황 및 위반 농가에 대한 관리실태 감독

5. 수입 축산물 위생 관리강화 및 제도 개선 |||||

5.1 수입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

- 1) 추진 과제
 - 국제업무 전담조직 설치, 국가별 축산물별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방법 도입, 국제기구 참석 활성화 방안 등
 - 축산물 수출 상대국 작업장 (도축·가공·보관)장 점검 강화
- 2) 추진실적
 - 수입위험평가팀(검역원 검역검사과) 구성('04. 8. 30)
 - 현재 당면 통상현안중 주요현안부터 수입 위험 평가 업무 수행

- 수입위험분석지침 작성 및 검역원 관련과에 배포('04.12)
- 국제기구의 참석
 - 04년도 : 총 22회 참석(WTO/SPS 3회, OIE 3회, Codex 8회 등)
 - 05년도 : 총 12회 참석(WTO/SPS 6회, OIE 2회, Codex 4회 등)
- 해외수출작업장 현지점검 (04년 : 10개국 9회, 05년 : 12개국 9회)
- 3) 향후 추진계획
 - 국제기구 전담조직 설치
 - 우선 검역원의 국제협력계 및 수입위험평가팀을 활용하고, 검역원 조직진단 및 검역기능 발전대책 수립과 연계, 국제업무 및 수입위험 평가조직 신설 추진
 - 국제기구의 참석 지속 추진(년중)
 - 축산물 수출 상대국 작업장 점검 지속 추진(년중)

5.2 축산물 수입판매업소 위생관리 강화

- 1) 추진과제
 -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의 수입축산물 거래 투명화
 -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업무를 검역원으로 전환
- 2) 현재까지의 추진실적
 - 축산물 수입판매업 신고 : 1,772개소
 - 관할 시·군·구에 영업 신고
 - 축산물수입판매업영업자는 축산물수입 판매관련 서류만 2년간 보관토록 함
 -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

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보관업·축산물은 반업·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중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는 수입축산물 판매관련 기록을 구체화 하도록 개정(별표 13. 제3호 라목)

-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업무를 검역원으로 전환(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완료, 06.9.23 부터 시행)

3) 향후 추진계획

-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(제24조제1항)완료에 따른 이관추진
 - (현행) : 제21조제1항제5호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- (개정) : --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1조제1항제6호 축산물판매업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(이하 “검역원장”이라 한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6. 위생·안전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■■■■■■

6.1 소비자 단체와 협력 강화

1) 추진과제

- 안전 축산물 생산 및 소비에 관한 교육·홍보
-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 소비자단체 임원 참여확대/
 - 축산물위생심의회 위원 전체인원의 약 25%수준

- 생산자, 수의관계 공무원 교육시 소비자단체 임직원 강사초빙
- 축산물 위생·안전성 연구사업공동수행 및 캠페인 실시 등

2) 현재까지 추진실적

- 05년도 소비자단체와의 협력강화 사업 추진
-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
 - 소비자단체(12명) 및 여성심의위원할당확대(16명, 전제 30%)
- 소보원 및 소시모와 과학적 공동연구 등 공동사업실시(검역원)
-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교육시 소비자단체 임원 참여(강사)
 - 소비자보호원(서정희 위원), 지역소비자단체 임원, 소시모(황선옥 이사), 녹색 소비자연대(조운미 본부장), 지역 소비자단체 임원 등
- 소비자 단체별 협력사업 추진과제 선정 (13개 단체 13개 과제)

3) 향후 추진계획

- 소비자 단체별 사업추진내용의 분석 및 정책에 반영
- 06 소비자 단체별 협력사업 추진과제 선정
-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교육시 소비자단체 임원 참여 (강사) 